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37

발의연월일: 2022. 8. 2.

발 의 자:김승원·강득구·김의겸

김주영 • 양기대 • 유정주

유건영 · 임오경 · 주철현

최강욱 • 한병도 • 홍정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로하여금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소(PC방)에서 부모 또는 형제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계 정을 통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시 이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 의 행정처분과 처벌은 PC방 영업자에게 처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게임물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 등급구분 준수 안내문 부착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호의2 및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신설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제35조제1항제4호 중 "때"를 "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 등급구분 준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를 "제28조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제46조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32조제1항제 3호에 의한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 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한 자 제48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32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28조제5호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
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
	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
	영하는 자는 제21조제2항제2
	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급구분
	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	
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u>때</u> <u><단서 신</u> <u>설></u>

5. (생략)

② ~ ⑤ (생 략)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u>.</u>
1. ~ 3. (현행과 같음)
4
<u>때.</u> <u>다만, 인터</u>
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
영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
에 따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 등급구분
준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
<u>다.</u>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1. (생략)
-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3. (생략)
- ② ~ ④ (생 략)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u><신</u> 설>

<u>3의2.</u> (생략) 4. ~ 6.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1. (현행과 같음)
, _ , .
2. <u>제28조제4호, 제5호, 제5호의</u>
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u>.</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32
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제21조
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
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
<u>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u> <u>하게 한 자</u>
하게 한 자
<u>하게 한 자</u> 3의3.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u>하게 한 자</u> <u>3의3.</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u>하게 한 자</u> <u>3의3.</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다.

1. ~ 7의2. (생략)

<신 설>

8. (생략)

② (생략)

---.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32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 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원 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